https://doi.org/10.21186/IPR.2021.6.1.055

고령사회 노인빈곤 극복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고찰

김영철*, 김서호**
순복음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 Study on the Active Economic Activities by the Job Program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Young-Chul Kim*, Seo-Ho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bokeum Theological University*

Professor, Sunbokeum Theologic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주제어 고령사회, 노인빈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경제활동참여, 노인복지

Abstract This study regards the need for jobs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and as well as researches ways to participate in active economic activities in old 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jobs for the elderly, improvement of awareness of the elderly and reinforce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a delivery system are required, and a legal basis for this is needed. To this end, occupations targeting the elderly must be selected first, and legal procedures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re must be social consideration and support for the elderl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employment for the elderly.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social consideration is required. Therefore, since the elderly policy without social consensus is bound to fail, various support methods that can lead to social support must be devised. Third, the elderly must have a sense of poverty and willingness to rehabilitate themselves. Elderly people should not only ask for their children and social support. The elderly must be able to find a way to become the economic agent themselves. To do this, a basic awareness of the elderly poverty consciousness is needed, and a change of awareness to escap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s necessary. Therefore, the elderly need to be self-reliant, and they must choose jobs according to their own abilities. In conclusion, the elderly job program is a part of income increase that solves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and the elderly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Key Words Aged Society, Poverty of the Elderly, the Elderly Job Program,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Welfare for the Elderly

Received 08 Jan 2021, Revised 14 Jan 2021
Accepted 20 Jan 2021
Corresponding Author: Seo-Ho Kim
(Sunbokeum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shkim2461@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 생활수준 및 환경의 개선으로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전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후에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14.0%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해 있다(행정안전부 홈피, 2020)[1].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 5천 명이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0: 21)[2].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36년에는 30%를 넘어서고, 40년 후인 '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9: 12)[3].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이어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박종란 외, 2020: 60)[4].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김미정, 2020: 3)[9]. 노년기의 일은 단순히 여생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은퇴 이후 잃어버렸던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여 새로운 자아실현과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박은애, 2019: 3-4)[5].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외국사례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겪게 되는 노인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노인빈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2명 중 1명(48.6%)은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과반수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통계청, 2020: 31-32)[2].

노인빈곤의 원인은 첫째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둘째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셋째 조기정년퇴직, 재취업 기회 등의 단절에 따른 소득의 상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 노인들은 일생을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전념해 왔으므로 특별한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정책이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자산수입, 경제활동수입, 퇴직금,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사회 실정에서는 노인세대의 자립생활은 점점 곤란하다.

3. 노인일자리사업

3.1.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들로는 정년제도, 노인의 빈곤, 복지재정의 부담, 가족기증의 약화, 노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노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김양건, 2020: 11)[6]. 노인의 빈곤문제는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특히 소득의 단절, 일터에서의 은퇴는 노후대책을 충분하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 있는 연금제도 등은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일반급부의 성격을 지닌 노인수당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빈곤한 상태이다.

둘째, 복지재정의 부담가중은 산업화・공업화・도시화의 진행을 가지어 왔고, 핵가족화를 초래하였으며, 핵가족제도 하에서 노인의 가정적 및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저하함에 따라 노인부양의 책임을 종래 가정으로부터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곧 연금제도와 공적부양, 그리고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확충이라는 방법으로 강구되며, 이는 국가의 비용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일찍부터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점증

하는 복지수혜층과 복지의 질 향상으로 인해 고복지·고부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중되는 복지재정의 부담은 인구고령화의 의한 노인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가 주원인이다. 고부담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여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계속되며 국민에 대한 고율의 과세는 형평성을 상쇄할 정도로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김세진, 2020: 38)[7].

셋째, 가족기능의 약화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들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가족의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와 개인중심주의적인 서구문명의 영향에 의해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으며, 산업화, 도시화에 의해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주택의 과밀화에 의한 가족 간의 별거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단 핵가족을 이룬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직업에의 성취와 가정적 안정이 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부가족 단위의 테두리 밖에 있는 노부모의 생활문제까지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퇴직 연도가 길어짐으로써 기존 세대의 경제활동 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기존 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다섯째, 노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노인복지법」에서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인권선언에서는 노인의 생계보장의 권리, 사회참여의 권리, 취업의 권리 등을 표방하였다. 이것은 노인은 단지 부양대상이어서는 안되며, 젊은 세대와 동등하게 사회에서 독립하여 자활할 권리가 있고, 생활의 기본은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연금에 의해 보장되지만 체력이 허용하는 한 일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며 그 위에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령자 일자리사업은 고령자 스스로가 경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인 성취욕구와 사회자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생산적인 복지 대책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과 고령자가 제공하는 능력 사이에는 심한 격차가 있고, 또한 노인이 원하는 일의 유형과 노동시장에서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경쟁체제하에서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동력은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이 없으면 교환관계에서 배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자들이 제공할 노동력의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3.2.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방향

3.2.1.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

노인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20: 3)[10].

3.2.2.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제도적 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참여자에 대한 보수는 지원되고 있으며, '일자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참여한 노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업주체와 법률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달라진다(권지선, 2018: 18)[8].

정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일자리가 노인에게 적합한지 고려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3조는 노인의 사회참여지원에 추가해서 제23조의 2를 신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①, ②항에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과제로 부여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김미정, 2020: 1)[9].

3.2.3.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용

보건복지부(2020: 4)[10]에 따르면, 「2020년 노인복

지사업안내(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	주요 내용
공공형	공익 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재능나눔 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사회 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3.3. 일자리사업의 효과

노인일자리사업은 가정적,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김양건, 2020: 57-60)[6].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소득보장의 한 방법으로의 효과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젊은 시절 경제적인 급부를 확보해 줄 수는 없지만, 일정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노후 소득보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적・사적 부양의 부담이 감소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자립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부양부담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도 감소하게 된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은 가족과 사회 내의 역할확보, 자존감, 자아정체감을 유지하게 한다. 노인은 취업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획득하면서, 가정 내의 권위도 살릴 수 있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스스로가 경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녀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성취욕구과 사회자원 활용이라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3.4. 주요 선진국의 노인일자리사업 사례연구

3.4.1. 일본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고령화 수준을 기록하는 일본에서는 노인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추이는 복지와 노동시장 연계를 통한 복지근로정책의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영선, 2019: 43)[11].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노인에 대한 부양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 최장수국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고도 산업발전으로 인해 노동인구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고령인력이 필요 하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잘 발달한 나라로, 노인복지정책에서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노인을 위한 고용과 소득증대, 취업알선, 단체별·지역별 고령자사업 개발, 사회참여 사업, 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인취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윤덕재, 2019: 37)[12].

1974년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의무고용제도가 정책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모든 민간기업들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전체 종업원 6% 범위 내에서 의무적 고용을 규정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더욱 높은 의무고용을 규정한다. 그리고 노인의 직업노동능력 개발을 위해 조사연구사업의 병행을 포함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조기 재취업을 위하여 일본정부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를 설치하여 노인들 및 사업주들에게 구인과 구직을 제공하는 정보지와 같은 소식지를 발행한다. 아울러 노인실업자들을 위하여 공공직업훈련, 직장적응훈련, 취업지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촉진수당과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노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을 위해 1년 동안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60세가 넘어 퇴직한 노인들의 재취업훈련 기간 동안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는 재취업 원조촉진 조성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직업안정소의 사업들은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노인직업 상담실과 연계되어 실시된다(이영선, 2019: 47)[11].

'고령자 고용취업지원센터'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년기부터 노인이 자신의 장

래생활을 설계하고 능력개발하며, 건강유지하는 것을 지원한다. 노동성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 내에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노년기 직업생활설계를 위하여 상담과 지도를 제공한다. '실버인재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건강하고 근로욕구가 있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회원으로 두고, 그들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확보, 지역사회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인재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직종은 회계, 서기, 정원관리, 방문판매, 창고관리, 편집 및 번역, 보수, 목공, 아동·노인 돌봄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시장형 사례에서 '마음의 이자카야(いざかや, 居酒屋)'는 선술집, 대폿집을 뜻하는 패스트푸드 가게인데, 노인들이 직접 만든 메뉴를 제공하여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종업원들 평균연령은 70세 정도이며, 건강하고 의욕적이며 경험 또한 풍부한 노인들이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직접 고안한 맛있는 메뉴를 가지고 고객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한다는 것을 가게의 컨셉으로 한다. 이자카야에서 일하는 노인들은 근로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손님들은 다양한 인생경험을 가진 노인종업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과 따뜻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배예슬, 2018: 44)[13].

3.4.2. 미국의 경우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유입해 온 이민자들의 각 집단이 그들 스스로 선호하는 지역에서 자연적・인문적 조건에 적합하게 촌락단위로 정착하여 각각 독특한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 및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른 독자적 역할이 크다.

미국행정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태생적으로 주정부가 생겨 주정부법과 행정체계가 확고히 운영된 연후에 연합 주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연방정부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재정지원규칙 중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주법은 지침과 규칙 중심으로 주정부와 주의회에서 정한 독자적인 주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병원, 학교, 노인복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연방법은 이를 통제하는 상위의 개념인데, 노령연금(Pension for the Aged),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과 같이 포괄적 연금법, 사회보험관련법, 재정지원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배예슬, 2018: 30)[13].

미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정년연장을 위하여 강제퇴직을 없애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민간차원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인 단계별 정년퇴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년을 연장해 주고 있다. 1980년 이후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실직자, 저소득 고령 노동자에게 생활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직업훈련 후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에 따르면, 빈곤선의 125% 이하 저소득 고령층 노동자에게 현장체험 및 훈련으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시간당 약 5달러 이상 최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진단, 개인상담, 취업알선, 기술훈련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박만섭, 2016: 49).

노동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고령자복지협의회의 '녹색손길프로그램(Green Thumb Program)'에서는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 지역사회 환경을 미화하고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노인들과 불우한 노동자들을 고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고령자 지원사업(Senior Aids Program)'에서는 주 20시간 도서관 및 고등학교 등에서 일하는 노인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국립노인봉사단'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서 55세 이상 은퇴자 약 50만 명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상겸, 2010: 19)[15].

4.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4.1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는 없지만, 직업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노인도 동일한 지위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과거보다 다양해진 노인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오봉욱 외, 2016: 116-117)[16].

법제도 중 노인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요구되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법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노인복지를 규율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선해야만 한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이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법적 체계상의 변화는 없고, 필요시 개별 조항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률의 체계성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런 법체계 미비는 법률 전체는 물론 그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장의 조항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기본법」으로 수정,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이척희・노재철, 2020: 74)[17].

또한 노인전담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도 노인 개인의 올바른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하거나 선정되어, 노인의 재훈련을 통해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사회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헌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정경자, 2020: 97)[18].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2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양건, 2020: 15)[6]. 우리나라의 정년연한이 연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때문이다. 이런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김한식 외, 2019: 285)[19]. 그러나 정년연장은 청년세대의 취업을 차단하는 불합리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적 정비 없는 정년연장은 세대 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30대 이하의 젊은층과 세대갈등이 40대 이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통계청, 2020: 40)[2], 이는 청년세대와의 대화는 물론 사회적인 합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현재 노인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일자리이거나, 아니면 단순 육체노동에 불과한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혜택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인의 취업은 결국 기업에 대한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에 없다면 해당 기업이 노인취업에 적극적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노인취업 대상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 최소한의 인건비와 같은 지출부분을 지원해 주고, 연장기간에 따라서는 혜택 이외에도 기업자금의 융자, 종업원의 후생시설 지원, 기타 행정적・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4.3 노인들의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지닌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이 쇠퇴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즉, 노화에 있어서 인지능력은 정신연령이나 달력연령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박종란 외, 2020: 81)[4].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노년기를 충실하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청년시절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건실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할 것은 대체로 건강은 물론, 경

제적 안정, 일이나 여가 등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는 자세이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도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연마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김한식 외, 2019: 288)[19].

그러므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5. 결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빈곤과 연결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증대는 국가정책상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연구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과 그에 따른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방안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제도 중 노인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요구되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법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노인복지를 규율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선해야만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기본법」으로 수정,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노인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일자리이거나, 아니면 단순 육체노동에 불과한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혜택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지닌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References

[1] 행정안전부 홈피, 2020.
[2] 통계청, 「고령자통계」, 2020.
[3]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4] 박종란 외, 「노인복지론」. 서울: 교학도서, 2020.
[5] 박운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일의 의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6] 김양건, “한국 중장년 일자리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7] 김세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8] 권지선, “노인일자리사업 직무환경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9] 김미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동화구연실버강사의 내러티브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0] 보건복지부, 「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2020.
[11] 이영선, “한국의 노인일자리 창출 최적전략에 관한 연구: EU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2] 윤덕재,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비교연구: 실버인재센터와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3] 배예슬,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韓·美·日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4] 박만섭,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사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5] 김상겸, “노인취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6] 오봉욱 외,「사회문제론」. 파주. 경기: 정민사, 2016.
[17] 이척희・노재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법적 대응 방안”. 『산업진흥연구』 Vol.5 No.4 : 73-79, 2020.
[18] 정경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 참여의 구축방안 연구”. 『산업진흥연구』 Vol.4 No.1 : 89-98, 2020.
[19] 김한식 외,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정민사, 2019.

김 영 철(Kim, Young Chul)

・2KC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 M.S.W)
・순복음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 Ph.D)과정
・현)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 교수
・현)서울시공동모금회 배분심사위원
・현)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회장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정책, 의료복지
・E-Mail : sunhan117@hanmail.net

김 서 호(Kim, Seo-Ho)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사회복지상담, Ph.D)
・호서대벤처전문대학원(M.A.)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M.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M.Div.)
・Covenant University (실천신학, Th.M.)
・Covenant University (신약신학, Th.D.)
・총회신학대학원(목회학, D.Min)
・현)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부총장)
・관심분야 : 사회복지, 복지상담, 기독교복지, 현장실습
・E-Mail: shkim2461@hanmail.net